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 전적 제출 안내

1. 전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2026년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_덕양구(A)_2차]
-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다.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관내(서울문산고속도로 기준 좌측)
- 라. 공사개요 : 콘크리트 균열 보수 등 451개 공종(내역서 참고)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9. 까지
- 바. 추정금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추정가격 109,090,909원 + 부가세 10,909,091원)
- 사.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2. 전적 제출 및 계약 방법

- 가. 전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 수의 전적 대상 공사입니다.
-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바. 건설 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적 제출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6. 전적서 제출

- 가. 제출 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 나. 본 전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전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 같은 전적 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전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전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 전적에 타 업체가 전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전적서 제출이 불가)
- 라. 전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가. 개찰일시 : 2026. 9. 15. 11:00
-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 가. 본 수의 건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건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천한 예비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건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다. 1순위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건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건적 제출의 무효 및 계약 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건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 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 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 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 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 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48,106	190,162	1,913,384	2,033,085	926,427	-	-	6,511,164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 내용

- 1) 수의 견적 안내문, 지방서, 설계도면, 설계 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 견적 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 견적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 031-8075-472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
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방이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
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 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
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고양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